

평창군 기초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·위탁 운영 동의안

의안 번호	314
----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2017. 5. .
제 출 자 평 창 군 수

□ 제안이유

- 「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」 제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평창군 기초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 및 위탁 운영에 대한 평창군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함.

□ 목 적

-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이 요구되는 기초형 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 및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전문기관으로 위탁, 운영하도록 하여 위기관리능력 향상과 효율적인 사업 수행으로 지역사회 자살률 감소 및 정신건강 증진사업에 중추적인 역할을 정립, 정신질환자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.

□ 개 요

- 설치시설 : 기초정신건강증진센터 1개소
 - 기존의 기본형 정신건강증진센터가 기초정신건강증진센터로 확대, 전환
- 위탁시설 : 기초형 정신건강증진센터 1개소
- 소재지 : 평창군 평창읍 평창군보건의료원 신관 2층, 277.5㎡
- 위탁기간 : '17. 8. 1.~'20. 7. 31.(3년)
- 위탁료 산정('17년) : 169,180,000원
('18년) : 275,940,000원
- 위탁내용 : 기초형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
- 수탁기관 선정 : 공개모집

※ 단, 사업의 효과적 수행을 위하여 객관적이고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수의계약도 가능

□ 운영형태의 장 · 단점

직영	장점	○ 행정기관 간 협력용이
	단점	○ 정신보건 기간제근로자의 공무원 전환에 대한 부담 ○ 정신질환자 관리 및 대응체계의 전문성 부족
위탁	장점	○ 수탁기관의 진료체계 및 전문인력 확보 가능 ○ 지역주민들의 정신보건의료서비스 요구도에 부응하는 대상자 맞춤형 사업 추진 가능 ○ 응급위기관리 지원체계 구축-응급 위기개입 시 지원협력 용이 ○ 다양한 폭력 피해자에 대한 심리지원 및 전문적인 치료, 사회적 재활의 효율성 증대
	단점	○ 위탁기간 만료로 기관변경 시 업무 및 인력 계속성 결여 ○ 기관 인지도 향상 노력 전력
<p>○ 결론</p> <p>- 전문기관 위탁운영으로 인력관리의 부담을 덜고 지속고용에 의한 전문성 및 경험 축적으로 위기관리능력 향상과 효율적 사업수행이 가능하게 하고, 주민들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하는 정신보건의료서비스의 수준 향상을 위하여 전문기관에 운영을 위탁하는 것이 효율적임</p>		

□ 위탁조건

- 기본시설 : 사무실, 상담실, 회의실, 교육실, 당직실 등의 정신보건 서비스 시설요소에 대한 권고사항 준수
- 센터구성인력 : 7명(센터장 1, 팀장 1, 팀원 2, 자살예방 3)
- 사업수행인력 : 고용승계 (치료적 관계형성 및 사업의 연속성 고려)
 - 고용승계 인력 : 기간제근로자 6명(정신 3, 자살예방 3)

- 수탁기관 변경시 사업수행 인력을 원칙적으로 고용승계
- 수탁기관 변경 : 지방자치단체가 도 및 보건복지부에 보고
- 수탁기관 당 1개소의 정신건강증진센터를 위탁·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, 불가피하게 2개소 이상 위탁을 할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한다.
- 수탁기관이 2개소 이상의 센터를 위탁받을 경우, 반드시 센터장을 각각 두어야 하며 동일인이 2개소 이상의 센터장을 겸임할 수 없음.
- 수탁기관은 평창군의 정신건강증진사업 및 자살예방사업을 수행한다.
- 정신과 전문의 1인 이상을 임상자문의로 위촉하여 정신건강증진센터의 사업수행에 대한 수시 자문체계를 구축하여야 하나, **평창군의 기초형 정신건강증진센터 센터장은 정신건강의학 전문의로 한다.**
 (※ 정신건강증진센터장이 정신과 전문의인 경우 임상자문의를 별도로 임명하지 않아도 됨)

+ 임상자문의를 역할

-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 수행인력 및 관련인력에 대한 교육 및 자문
- 사례관리와 정신건강 상담사례에 대한 정기적인 지도·자문
- 환자 및 가족 대상의 교육·상담·진단적 평가
- 정신보건법에 따른 입원 필요성, 정신의료기관 등 입원, 정신질환자의

+ 임상자문의 자문수당 지급(국비보조기준)

- 임상자문의에게는 매 사안별로 자문위원 수당체계에 준하는 비용 지급 가능
- 회의참석 및 자문위원 수당은 1일당 100,000원 지급

□ 위탁기관의 기준

- 위탁기관 : 정신보건법 시행령 제3조의 2에 의거한 수탁자격을 갖춘 기관
 1. 정신보건시설
 2.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학교
 3. 정신보건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

○ 인력기준 및 자격요건

구분	기초정신건강증진센터
센터장	○ 자격 · 정신과 전문의(공중보건의사 제외) · 1급 정신보건전문요원(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 경력 8년 이상) ○ 근무형태 : 상근(주5일)을 원칙으로 하되, 수탁기관의 여건에 따라 비상근 근무 가능
팀장	○ 자격 : 정신보건전문요원(정신건강증진센터 경력 2년 이상) ○ 근무형태 : 상근(주5일)
팀원 1	○ 자격 : 정신보건전문요원
팀원 2	○ 자격 : 간호사, 임상심리사, 사회복지사 및 기타관련분야의 자격증 소지자
사업수행지원인력	○ 업무 : 행정 및 회계를 포함한 사업수행인력 지원 업무 * 정신과 전공의 포함
임상자문의	○ 자격 : 정신과 전문의(센터장이 정신과 전문의인 경우 두지 않을 수 있음) ○ 근무형태 : 수시자문

※ 센터장의 월지급액

- 비상근 센터장 : 주 1회 이상 출근, 1주일에 총 8시간 근무(퇴직금 없음)
- 월지급액 : 매월 1,093,000원(주 8시간 , 월 4주 근무기준)
 - ⇒ 정신과 전문의
 - ⇒ 1급 정신보건전문요원(박사학위 소지자로 정신보건기관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으며 대학 이상의 교육기관에서 부교수급 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)

※ 정신건강증진센터 인력은 정신건강증진센터장이 임면함.

※ 정신건강증진센터 인력의 근무형태는 상근(주5일)을 원칙으로 함.

□ 추진절차

- ① (추진계획수립 및 방침결정) 수탁자 선정기준, 세부사업계획 수립 등
- ② (군 의회 동의) 민간위탁 사무
- ③ (적격자 선정 심의위원회 구성) 위탁기관 적격자 심사위원회
- ④ (수탁기관 모집 공고 및 선정) 공개모집을 통한 수탁기관 선정
- ⑤ (위탁협약 체결) 위탁운영 협약서 작성, 위탁기간(3년)
- ⑥ (공증)
- ⑦ (사무 및 시설 인수·인계) 인수·인계서 작성, 사후 지도·감독

□ 주요 추진일정

- 군 의회 동의(민간위탁 사무): '17. 5.

- * (법적근거) 「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」 제4조(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등)
- * (조례내용/제3항) 군수는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는 자치사무는 평창군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함.

- 위탁기관 모집 공고 : '17. 5.

- * (공고방법) 평창군 홈페이지에 공고
- * (신청자격) 정신보건법 시행령 제3조의 2에 의거한 수탁자격을 갖춘 기관

- 평창군 민간위탁기관 적격자 심사위원회 구성 : '17. 5.

- * (법적근거) 「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」 제7조(구성)
- * (위원구성) 6명(공무원 4, 민간인 2), 위촉직
- * (심의사항) 위탁기관 적격자 심사·선정

- 민간위탁기관 적격자 심사 및 선정 : '17. 6.
- 심사결과 보고 및 수탁기관 선정 통보 : '17. 6.
- 위탁협약 체결 : '17. 6.
- 공증 및 이관 : '17. 7.

- 붙임 1. 위탁료 산정내역(2017~2018년) 1부
 2. 기초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 위치도 1부
 3. 관계법령 발췌서 1부.

【붙임 1】

2017년 기초정신건강증진센터 위탁운영료 산출내역

1. 총괄표

(단위 : 원)

구 분	지출항목	'17년 위탁금	비고
계		169,180,000	
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(1개소)	소계	120,730,000	
	인건비	50,660,000	4명(센터장 1, 팀장 1, 팀원 2) 지급기간 : 5개월
	사무관리비	17,670,000	프로그램 운영 및 사무관리
	공공운영비	10,000,000	차량렌탈료 및 공공운영비
	의료 및 구료비	5,000,000	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(중위소득 100% 이하)
	시설장비유지비	20,000,000	구조개선 및 내부시설
	자산취득비	15,000,000	컴퓨터 및 사무기기 구입
	수탁기관관리비	2,400,000	수탁기관 관리비
정신보건중사지수당	소계	3,000,000	
	인건비	3,000,000	정신건강증진센터 및 자살예방인력 수당 지급 지급기간 : 5개월
자살예방사업 전담인력 지원	소계	45,450,000	
	인건비	45,450,000	3명(자살예방사업 전담인력) 지급기간 : 5개월

2. 과목별 산정내역

(단위: 천원)

구 분		위탁예산(2017)		
		계	산출기초	비고
총계		169,180		
정신건강 증진센터 운영	계	120,730		
	인건비	50,660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센터장 급여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월 1,093,000원×5월=5,465,000원 · 팀원(3명) 급여 및 4대보험료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월 2,293,000원×3명×5월=34,395,000원 - 보험료 220,000원×3명×5월=3,300,000원 - 명절휴가비 1,000,000원×3명=3,000,000원 - 출장여비 : 300,000원×3명×5월=4,500,000원 	
	사무관리비	17,670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홍보 및 교육 등 프로그램운영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3,000,000원×5월=10,000,000원 · 기타 일반운영비=10,070,000원 	
	공공운영비	10,000	· 차량렌탈료 및 공공운영비 : 10,000,000원	
	의료 및 구료비	5,000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정신질환자 및 자살시도자 치료비 지원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100,000원×10명×5월=5,000,000원 	
	시설장비유지비	20,000	· 구조개선 및 내부시설	
	자산취득비	15,000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컴퓨터 : 1대 1,500,000원×2대=3,000,000원 · 복합기 : 1대 6,000,000원 · 의자 및 테이블 등 비품구입 : 6,000,000원 	
	수탁기관관리비	2,400	· 수탁기관 관리비	
	정신보건 증사자수당	인건비	3,000	· 월 120,000원×5명×5월=3,000,000원
자살예방사업 전담인력지원	인건비	45,450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팀원(3명) 급여 및 4대보험료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월 2,293,000원×3명×5월=34,395,000원 - 보험료 220,000원×3명×5월=3,300,000원 - 명절휴가비 1,000,000원×3명=3,000,000원 - 출장여비 : 317,000원×3명×5월=4,755,000원 	

2018년 기초정신건강증진센터 위탁운영료 산출내역

1. 총괄표

(단위 : 원)

구 분	지출항목	'18년 위탁예산	비고
계		275,940,000	
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(1개소)	소계	170,800,000	
	인건비	120,384,000	4명(센터장 1, 팀장 1, 팀원 2) 지급기간 : 12개월
	사무관리비	22,000,000	프로그램 운영 및 사무관리
	공공운영비	15,000,000	차량렌탈료 및 공공운영비
	의료 및 구료비	5,000,000	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(중위소득 100% 이하)
	시설장비유지비	5,000,000	시설 및 장비유지
	수탁기관관리비	3,416,000	수탁기관 관리비
정신보건시설 종사자 수당	소계	8,640,000	
	인건비	8,640,000	정신건강증진센터 및 자살예방전담인력 수당 지급기간 : 12개월
자살예방사업 전담인력 지원	소계	96,500,000	
	인건비	96,500,000	3명(자살예방사업 전담인력) 지급기간 : 12개월

2. 과목별 산정내역

(단위: 천원)

구 분		위탁예산(2018)		
		계	산출기초	비고
총계		275,940		
정신건강 증진센터 운영	계	170,800		
	인건비	120,384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센터장 급여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월 1,093,000원×12월=13,116,000원 · 팀원(3명) 급여 및 4대보험료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월 2,293,000원×3명×12월=82,548,000원 - 보험료 220,000원×3명×12월=7,920,000원 - 명절휴가비 1,000,000원×3명×2회=6,000,000원 - 출장비 :300,000원×3명×12월=10,800,000원 	
	사무관리비	22,000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교육,홍보,캠페인 및 프로그램운영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2,000,000원×5월=10,000,000원 · 기타 일반운영비=12,000,000원 	
	공공운영비	15,000	· 차량렌탈료 및 공공운영비 : 15,000,000원	
	의료 및 구료비	5,000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정신질환자 및 자살시도자 치료비 지원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200,000원×25명=5,000,000원 	
	시설장비유지비	5,000	· 시설 및 장비 유지보수비	
	수탁기관관리비	3,416	· 수탁기관 관리비	
	정신보건시설 종사자수당	인건비	8,640	· 월 120,000원×6명×12월=8,640,000원
자살예방사업 전담인력지원	인건비	96,500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급여 및 4대보험료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월 2,102,230원×3명×12월=75,680,000원 - 보험료 210,000원×3명×12월=7,560,000원 - 명절휴가비 950,000원×3명×2회=5,700,000원 - 출장비 :210,000원×3명×12월= 7,560,000원 	

■ 지방자치법

제104조(사무의 위임 등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,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.

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(사업소·출장소를 포함한다)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.

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·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.

■ 정신보건법

제13조(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 등)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보건소를 통하여 정신보건시설 간 연계체계 구축, 정신질환의 예방, 정신질환자의 발견·상담·진료·사회복귀훈련 및 이에 관한 사례관리 등 지역사회정신건강사업을 기획·조정 및 수행할 수 있다.

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·공립정신의료기관을 통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을 지원하고, 시·군·구(자치구를 말한다)간 연계체계 구축, 응급정신의료서비스 제공 등 광역 단위의 사업을 수행하며, 그 밖에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수행 하여야 한다.

<개정 2008.3.21.>

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사회 정신보건 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보건소 또는 국·공립 정신의료기관에 정신보건센터를 설치하거나 그 사업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

위탁할 수 있다.

④ 보건소 또는 국·공립 정신의료기관은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정신질환자를 관리하는 경우에는 본인 또는 보호의무자의 동의 하에 행하여야 한다.

⑤ 보건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정신 보건전문 요원을 둘 수 있다.

⑥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의 집중적이고 전문적인 지원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앙정신보건사업지원단을, 시·도지사는 지방정신보건사업지원단을 각각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
<개정 2008.2.29., 2010.1.18.>

⑦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중앙정신보건사업지원단 및 지방정신보건사업지원단의 직무범위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.

<개정 2008.2.29., 2010.1.18.>

제13조의2(정신보건센터의 설치)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3조 제1항에 따른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의 실시를 위하여 시·군·구 단위로 정신 질환자의 발견·상담·진료·사회복귀훈련 및 이에 관한 사례관리 등을 실시하기 위한 정신보건센터를 설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의 정신보건센터의 설치를 위한 재원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.[본조신설 2008.3.21.]

■ 정신보건법 시행령

제3조의2(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의 위탁대상 기관·단체) 법 제13조 제3항에서 "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" 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말한다.

1. 정신보건시설
2.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학교
3. 정신보건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

[전문개정 2009.3.18.]

■ 지역보건법

제13조(보건소의 기능 및 업무 등) ①보건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서 다음 각 호의 기능 및 업무를 수행한다. <개정 2008.2.29.>

1. 건강친화적인 지역사회 여건의 조성
2. 지역보건의료정책의 기획, 조사·연구 및 평가
3. 보건의료인 및 「보건의료기본법」 제3조제4호에 따른 보건의료기관 등에 대한 지도·관리·육성과 국민보건 향상을 위한 지도·관리
4. 보건의료 관련기관·단체, 학교, 직장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
5. 지역주민의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·관리를 위한 다음 각 목의 지역보건 서비스의 제공
 - 가. 국민건강증진·구강건강·영양관리사업 및 보건교육
 - 나.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
 - 다. 모성과 영유아의 건강유지·증진
 - 라. 여성·노인·장애인 등 보건의료 취약계층의 건강유지·증진
 - 마. 정신건강증진 및 생명존중에 관한 사항
 - 바. 지역주민에 대한 진료, 건강검진 및 만성질환 등의 질병관리에 관한 사항

② 제1항에 따른 보건소 기능 및 업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■ 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

제4조(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등) ①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군수의 소관 사무 중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업무 등 국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.

1.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
2.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
3.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
4. 기타 시설관리등 단순행정 관리사무

- ② 군수는 제1항 각호에 해당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정기적·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때에 민간위탁을 한다.
- ③ 군수는 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할 때는 자치사무는 평창군의회 동의를 얻어야 하며 기관위임사무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된 사항은 해당 기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
- ④ 군수는 위탁사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.